

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동의안

심사보고서

2019년 8월 28일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19년 8월 14일

나. 제출자: 강서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19년 8월 21일

라. 상정일자: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상정·의결(2019. 8. 28.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가족정책과장)

가. 제안이유

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(2019. 4. 23. 개최) 시 의결된 『협의회규약개정안』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 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협의회 부담금의 예산 편입 근거 신설(규약 제13~14조)

- 부담금을 협의회장이 속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편입하고 세출 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
- 회장단체 변경 시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고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행정규칙 준용

2) 향후일정

- 입법예고: 해당없음
- 개정규약 동의안 의결 후 고시: 2019. 9월 중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152조(행정협의회 구성)
- 지방자치법 제158조(협의회의 규약 변경 및 폐지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(전문위원: 정우숙)

- 이 동의안은 2019년 4월 23일에 개최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8차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『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개정안』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,
-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전국다문화협의회 부담금을 협의회 회장이 속한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편입하고 지자체의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게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므로 보다 투명한 회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붙임 관계법령 1부.

□ 지방자치법

- 제152조(행정협의회의 구성)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구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·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, 시·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·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-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

- 제158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 한다.